

#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3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유만희,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4명)

## 1. 주문

-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소한의 인권조치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가감 없이 표현해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상 방역 통제를 빌미로 북한에서의 인권은 더욱 박탈당했으며, 봉쇄구역 진입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생명권 침해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한반도 역사상 전례 없는 잔인무도한 수준이며,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외부정보 차단을 위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며, 체포한 탈북민의 강제 북송 과정에서 공포심을 심고자 여성과 아동에게 성폭행 및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 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함
-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날은 지정된 바 없음
-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작년 한국, 미국, 일본이 그 1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매년 매년 2월 17일의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할 것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등

###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최소한의 인권조치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가감 없이 표현해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며, “우리는 성냥갑 안에 갇혀 있다.” 라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신음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외부정보 차단을 위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며, 체포한 탈북민의 강제 북송 과정에서 공포심을 심고자 여성과 아동에게 성폭행 및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등,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상 방역 통제를 빌미로 봉쇄구역 진입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생명권 침해까지 자행되며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였습니다.

작년 2월 17일 COI 보고서 공개 10주년을 맞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20일 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및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아직도 북한 괴뢰정부에 억류되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북한인권증진의 날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5. 11.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일동**